

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지침(안) 주요 변경 사항

I 근 거

-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~71조
- 경기도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
- 경기도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

II 목 적

-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(안)을 수립
- 중입 배정 업무 개선 사항에 대해 각 학교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

III 지침(안) 주요 변경 내용

구분	변경 내용	비고
가. 학교폭력조치 8호처분(전학 조치) [지침 p.16]	▷ 변경 대상자 및 표현 수정 1)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급생인 경우 2)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 ○ 가해학생의 중학교 배정 시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○ 피해학생의 중학교 배정 시 가해학생이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○ 피해학생의 중학교 배정 시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	• 기존 불명확한 표현 • 의미가 명확하도록 대상자 및 표현을 수정
9. 기타 배정 나.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 학생의 배정 [지침 p.19]	▷ 변경 신규 공동주택지구 입주예정 학생 배정 대상 수정 • 성남 북정1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→ 위례 A2-7BL, 성남금토 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	• 2026학년도 (2027.2월까지) 위례 A2-7BL,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 학생 발생에 따른 지침 수정

9. 기타 배정 나. 재개발정비 사업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학생의 배정 [지침 p.19]	▷ 신설 재개발, 재건축정비사업 등에 따른 이주 학생 대상 배정 • 이주 전 주소지의 근거리 중학교로 배정 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	•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따른 이주 학생의 기존 생활권 및 교육 연속성 보장을 위해 신설
---	---	---